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1.10.1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1년 10월 14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상덕규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서강동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4항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내용

(1) 대　　상 :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

(2) 시 행 자 :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(3) 설 치 안 : 기존 출입구를 위치 변경하여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

(4) 에스컬레이터설치 세부추진현황(계획)

추진일정		추진내용	추진현황
2011년	2011.05월 ~ 2011.11월	● 실시설계용역 시행(약 180일) - 공사대상 최종 선정	계 획 추진중
2012년 ~ 2013년	2011.11월 ~ 2013.06월	●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(약 540일)	계 획
	2013.06월 ~	● 공사준공 및 장비가동	계 획

(5)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요청사항

※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인근 마포구 창전동 243-1번지 서강동주민센터 부지(마포구소유) 무상사용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서강동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4항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

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서강동주민센터 부지인 마포구 창전동 243번지 1호 132㎡ 면적 중 33.85㎡ 면적과 건설관리과 소관 부지인 마포구 창전동 245-1외 2필지 81㎡ 면적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하였으며,

서강동주민센터 부지인 33.85㎡ 면적에 대하여 에스컬레이터 시설로 설치하여도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고, 인근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편의 시설 설치의 확장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며,

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서강동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 여부에 대하여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